

[사법농단 ISSUE PAPER ⑥]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8. 2.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5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6
가. 조사내용의 기재	6
나. 특조단의 평가	7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8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0

1. 사안의 개요

현재 2건의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2013다67587)이 대법원에 재상고심으로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¹⁾를 상대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 중 일부는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 5. 24. 하급심 판단을 모두 뒤집고,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때인 201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는 18년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는 13년이 경과하였다. 원고들은 소제기 당시 9명이었는데, 현재는 2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다.

대법원은 2015. 9. 5.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2013다67587)에 관하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016. 9. 5.에는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신일본제철 주식회사가 2012. 10. 1.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신일본제철'이라고 기재한다.

사건(2013다61381)에 관하여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2. 5. 24.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후속 소송을 제기하였다. 후속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은 위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본 기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였다. 후속소송 중 1건의 사건(2015다45420)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송달문제 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2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이 추정되어 있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사건번호	원고 청구금액 등	경과
1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대법원 2013다67587 (민사2부)	亡 박창환의 소송수계인 박재훈 外 22명 피고소가 400,000,000	부산지법 2007.02.02. 원고 패 부산고법 2009.02.03. 항소 기각 대 법 원 2012.05.24. 파기환송 부산고법 2013.07.30. 원고 일부 승
2	신일철주금	대법원 2013다61381 (민사1부)	여운택 外 3명 피고소가 4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08.04.03. 원고패 서울고법 2009.07.16. 항소기각 대 법 원 2012.05.24. 파기환송 서울고법 2013.07.10. 원고일부 승
3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대법원 2015다45420 (민사2부)	양금덕 外 4명 피고소가 562,083,333	광주지법 2013.11.01. 원고 일부 승 광주고법 2015.06.24. 원고 일부 승 (2017.7.31. 관련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4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고등법원 2014나58797	김계순 外 26명 (피해자 13명, 亡 4명 수계인 18명)	서울중앙지법 2014.10.30. 원고 일부 승 (2016.5.13. 판결 선고기일. 관련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피고소가 1,430,666,659	위해 추정 결정)
5	신일철주금	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곽해경 외 6명 피고소가 7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11.13. 원고 일부 승 (2017.10.27. 변론기일)
6	신일철주금	서울중앙지법 2016나56389	정복인 외 2명 (김공수의 유족) 피고소가 99,999,998	서울중앙지법 2016.8.19. 원고 일부 승 2018.11.8. 변론기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7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27	홍순의 외 59명 피고소가 995,126,803	서울중앙지법 2016.8.25. 원고 일부 승 (2017.10.26. 변론기일(추정기일: 조정이사 확인 및 대법원 관련사건 대기)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34	김형팔 외 4 피고소가 25,833,333	서울중앙지법 2016.8.25. 원고 일부 승 (위 홍순의 건과 병합. 위 사건과 동일)
8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4567	김옥순 외 4명 피고소가 5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6.11.23. 원고 일부 승 (2017.10.20. 변론기일) (추정기일: 관련사건 경과 참고를 위해)
9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광주지방법원 2017나59993	이경자 외 1명 피고소가 123,256,684	광주지법 2017.8.8. 원고 일부 승 2018.10.19. 변론기일(14:10. 303호) 2018.11.02. 변론기일(14:10. 303호) 2018.11.23. 판결 선고기일(") ⇒ 광주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10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양영수 외 3명 피고소가 470,000,000	광주지법 2017.8.11. 원고 일부 승 2018.10.31. 변론기일 2018.11.24. 변론기일 2018.12.12. 판결 선고기일

11	후지코시 강재 (근로정신대)	서울중앙지법 2017나21113	이춘면 피고소가 1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7.3.16. 원고 일부 승 2018.5.16. 변론기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계류 中
12	미쓰비시중공업 외 2명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9049	김금상 외 62명 원고소가 2,520,000,000	2013.12.9 소 제기 2018.8.23. 변론기일 (252명 원고 중 60여명만 소송 계속. 나머지 원고들은 취하 간주)
13	요코하마고무 외 68명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1064	서창동 외 666명 원고소가 6,68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4.21 소 접수 2016.6.13. 변론기일 (추정기일: 소장 부분 송달위하여 추정)
14	스미토모석탄 광업 (변경 후 → 스미이시 테리아루즈) 외 16명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송영호 외 85명 원고소가 8,60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5.5.22 소 접수 2018.8.31. 변론기일
15	히타치조센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582	이희열 피고소가 50,000,000	서울중앙지법 2016.9.21. 원고 일부 승 2017.4.20. 변론기일 (추정사유: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²⁾, 변호사단체³⁾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2) 2016. 12. 30.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후지코시 2차 1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조속히 판결 하라고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중략) "아흔을 넘어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처음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2000년 5월로 어느새 16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2016 11. 23.자 뉴시스 기사 「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 판결 빨리 나와야"」).

3) 2017. 11. 7.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미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책임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4년이나 미루고 있어 고통의 피해자들

제출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여 왔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이다.

이 문건에는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하면서 설득 대상자를 “이병기 비서실장”으로 특정하고, 주요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공감하고 있음을 피력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3다61381⁴),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잇따라 타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록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운명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년 5월 1일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2017. 11. 7.자 법률신문 기사 「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신속 판결하라"」).

4) 문건에는 “20013다6138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다61381”의 오타로 보인다.

<p>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p> <p>▣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u>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u></p> <p>▣ 이병기 비서실장</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p> <p>▶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세훈 사건</p> <p>▶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p>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중 하나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을 검토하면서, 시진국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조사보고서 168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이 작성된 배경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의 공식적 청와대 접촉창구는 민정수석실이

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있다 (조사보고서 168쪽).

특조단은, 이 문건에는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상을 전환하여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 활동하는 우회 전략을 제시한 내용이 있었고,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조사보고서 169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79, 359]문건에 관하여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을 뿐 위 문건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검토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문건들과 관련하여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는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고, 원세훈 사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

용하겠다는 기초 역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조사보고서 176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 조사에서는 2015. 3. 26.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만이 발견되어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법원행정처에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위 조사 이후 임종현 차장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문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외교부,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거래를 하였고, 여기에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도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일본 공사가 2012년 6월 방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외교부 ‘고충’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박찬익 심의관이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시 의견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재판을 미뤄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위 문건에 “피고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기재도 있어,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절차적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을 꼼꼼히 기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⁵⁾

또한 2014년 11월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5) 2018. 7. 24.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징용 재판연기-해외 법관자리 ‘거래시도’도” 참조

문건에서는 ‘조정 및 화해 시도’, ‘통치행위로 판단하는 사법자제론’, ‘전원 합의체 판단’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재판 연기 방안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⁶⁾

실제로 2015. 6. 22. 임종현 차장이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징용 소송)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하는 내용이 있고,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방안을 추진한 문건’에는 “신일철주금 사건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내세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⁷⁾

2016. 10. 6. 김앤장은 2015. 1. 28.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까지 변경하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⁸⁾ 외교부는 2016. 11. 29.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관행, 한일 청구권협정의 물적 적용범위, 일괄처리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 다양한 문제해결 제안과 합의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담겨 있었다.

여러 문건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및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거래’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2018. 7. 26.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총동원 됐다” 참조

7) 2018. 7. 26.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총동원 됐다” 참조

8) 2018. 7. 27. 자 한겨레 기사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참조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특조단 조사 결과에는, [79, 359]문건에 관하여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건들에 의하면, 재판이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에 연루된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어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상고심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